

배달용 치킨 원산지 표시 시행

혼동하게 할 우려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농림수산물부

일괄 표시하고 원산지 표시란에는 “수입산”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대상이 아닌 음식에 수입산을 사용하는 경우

- 4) 원산지 표시란에 다수 수입국가명을 나열하고 실제로는 판매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을 판매하는 경우

1.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가.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으나 포장재·포맷·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나. 가목에 따른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

- 1) 원산지 표시란에는 “수입국가명산”(이하 “수입산”이라 한다)으로 표시하고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 등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 2) 원산지 표시란에는 “수입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전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큰 글씨로 “국내생산”, “경기특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특산물 생산 지역명을 표시한 경우
- 3) 게시판 등에 “국산 김치만 사용합니다”로

2. 원산지 위장판매의 범위

가. 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을 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

- 1) “수입산”과 “국산”을 진열 판매하면서 “수입산” 표시를 잘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대상 농수산물과 떨어진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 2) “수입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원산지가 어디냐고 물을 때 “국산”, “국내산” 또는 “원양산”이라고 하는 대답하는 경우
- 3) 진열장에는 “국내산”만 원산지를 표시하여 진열하고 판매 시에는 냉장고에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된 “수입산”을 주는 경우 